

# 훈련위탁 계약서

**제1조(계약의 주체)** \_\_\_\_\_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함)과 주식회사 뉴엠원격평생교육원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함)은 "위탁기관"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2조(계약의 범위)** "위탁기관"과 "수탁기관"은 "별첨1. 인터넷 원격훈련 수강신청서"를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한다.

- ①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인·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내용은 "별첨1. 인터넷 원격훈련 수강신청서"와 같다.
- ② "위탁기관"은 "수탁기관"에게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, "위탁기관"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때의 개인정보는 성명, 주소, 휴대폰 번호, Email, 소속사업장, 주민등록번호 등이다.
- ③ "위탁기관"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에게 교육훈련 실시에 대하여 훈련 개시일 이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.

**제3조(계약 기간)** 계약 기간은 훈련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**제4조(훈련비의 지급)** "수탁기관"은 "위탁기관"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. 단, 아래의 경우 "수탁기관"은 "위탁기관"에게 해당 훈련비를 청구하고 "위탁기관"은 이를 지급한다.

- ① "위탁기관"이 사업주 위탁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받은 경우
- ②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
- ③ 훈련미수료 조치분

**제5조(수료 및 통보)**

- ① "수탁기관"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.
- ② "위탁기관"이 "수탁기관"에게 위탁한 훈련생이 "수탁기관"이 정한 훈련규정을 위반하거나 훈련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미수료 조치된다.
- ③ "위탁기관"은 훈련생의 변동사항(휴직, 퇴직, 전보 등)발생 시 즉시 "수탁기관"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성실 의무)**

- ① "위탁기관"과 "수탁기관"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 목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"위탁기관"은 "수탁기관"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"수탁기관"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내용과 지정 신청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"위탁기관"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하거나 "위탁기관"의 귀책사유로 "수탁기관"이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"위탁기관"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**제7조(개인정보동의)**

본 계약상 수집된 개인정보 및 교육관련 정보는 교육실시신고,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됨을 동의한다.

**제8조(해석 및 합의)**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날인 후 "위탁기관"과 "수탁기관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|      |  |      |  |
|------|--|------|--|
| 위탁기관 |  | 수탁기관 | 주식회사 뉴엠원격평생교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소   |  | 주소   |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309호<br>(문래동3가, 에이스하이테크시티) |
| 대표이사 |  | 대표이사 | 김 인 수  |

